

중국 외채관리제도 변경과 우리기업에 대한 영향 검토

(17. 6. 19)

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

I. 주요 변경내용(외자기업 중심 분석) 및 배경

- 외자기업에 대해 '투자차' 또는 '순자산 x 2배' 방식 적용
 - 중국은 '16.5~'17.5월까지 외자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해 '투주차(投注差)' 또는 '순자산(=자기자본)' 방식을 시범 적용해 왔음.
 - < 첨부 : '투주차' 및 '순자산 x 2배' 외채한도 계산방식 >
 - 순자산으로의 전환 추진 배경은 경내 우량 외자기업에게 외채차입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중국 내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한편, 안정적인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.
 - 그러나 비우량기업의 경우 본사 자본 증자를 통한 계속사업 유도, 사업 기회 축소 또는 심한 경우 철수 등의 의도가 있음.
 - 시범 기간 종료 후, 외자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순자산 외채한도를 2배로 확대하여 '18.5월까지 연장하기로 함.

< 기존 및 현행 외채관리제도 비교 >

구 분	기존 제도	현행 제도
담당 기관	외환관리국	
해외차입 기준 및 한도 관리	· '투주차' 또는 '순자산' 중 택일 ① 투자차 = 투자총액 - 등록자본금 - (단기 외채 잔액 + 중장기외채 발생액) - 위안화는 발생액기준(한도소진 후 회복 불가) ② 순자산 = 자기자본 - 외화 및 위안화 모두 잔액기준(대출금 상환 후 한도 회복)	'좌 동' · '순자산x2배' 적용 ⇒ 상세공식 첨부 참조
외채 사용	· 무역과 서비스 결제, 금융거래 등에 사용 - 차입금의 위안화 환전 가능 · 증권투자, 전대, 모기지 등에 사용 불가 - <u>외화 차입은 역내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불가</u> - 위안화 차입은 역내외 대출 상환 사용 가능	

자료: 中國人民銀行(중국인민은행), 國家外匯管理局(국가외환관리국)

II. 추진경과 상세 및 예측

- '18.5월 이후 '순자산 x 2배' 방식을 전면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
 - 외환관리국(역외 외화 대출 담당) 및 인민은행(역외 위안화 대출)은 '16.1월 상해, 천진, 광둥, 복건의 4개 자유무역시험구 내 등록 기업 및 27개 금융기구들을 대상으로 '순자산' 방식을 시범 실시함.
 - '16.5~'17.5월 중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,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'투주차' 또는 '순자산' 방식 중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.
 - 이어 '17.5월부터는 순자산 방식을 기존의 2배(순자산 x 2배, 잔액기준) 수준으로 확대한 후, 자유무역시험구 내의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동 방식(순자산 x 2배)을 과도기 없이 적용하기로 함.
 - 그러나 자유무역시험구 이외의 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'17.5~'18.5월까지 1년 과도기간을 추가 제공하여 '투주차' 또는 '순자산x2배' 방식 중 직접 선택하게 함.
 - '18.5월부터 외채관리 제도를 '순자산x2배' 방식으로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, 전국 모든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.

< 외채관리제도 추진 경과 및 예측 >

일 자	주 요 내 용	비 고
'16.1월	'순자산' 방식 시범 실시	·4개 자유무역구내 등록 기업 및 27개 금융기구 대상
'16.5~'17.5월	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되, 외자기업은 '투주차' or '순자산' 택일 가능	·외채한도 잔액기준 관리로 전환 ·외채도입 사전 심사제도 폐지 및 등록제(신고제) 도입
'17.5~'18.5월	순자산 규모를 2배 확대하여, '투주차' or '순자산 x 2배' 택일	·단 자유무역구내 등록 기업은 '순자산x2배' 방식 전면 적용
'18.5월 이후	'순자산x 2배' 방식 적용 예상	·전국 모든 기업에 대해 '순자산 x2배' 방식 적용 가능성 높음

자료: 中國人民銀行關於全口徑跨境融宏觀審慎管理有關事宜的通知(전국 범위의 해외용자 거시적 신중 관리와 관련한 사항의 통지['17년 9호], '17.1월) 내용 요약

III. 파급영향

- 비우량기업, '순자산' 방식 도입 시 외채한도 감소 우려
 - '투주차' 방식으로 외채한도를 이미 소진한 외자기업이라도 순자산 계산 방식으로 한도 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외채 차입이 가능함.
 - 이에 우량기업은 '17.5~'18.5월 중 '순자산x2배' 방식으로 전환 시 외채 차입 운용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. 그러나 ① 영업적자기업, ② 자본잠식기업 등 비우량기업은 순자산 방식 적용 시 외채 한도가 더욱 감소할 우려가 있음.

IV. 시사점

- 우리기업, 자체 외채한도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
 - 상해사무소 관할지역(상해, 강소성 등) 내 당행 현사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방문 및 유선통화 조사 결과(단 표본조사), 대부분의 기업이 동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낮고 사전적 대비(특히 적자영업 중인 기업은 더욱 심각함)도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함.
 - 더욱이, '18.5월 이후 '순자산'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, 비우량기업은 외채한도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. 이에 자체 외채한도 관리 방안을 사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.
- 당행, 제도변경 적극 안내 및 외채한도 사전 점검
 - 당행 여신부점은 현사자금 대출기업에 대해 외채관리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, 원활한 여신 지원을 위해 신규 및 증액 대출 전 거래기업의 외채한도를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함.

문의 :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
(연락처 : 070-7525-0857)

첨 부

'투주차' 및 '순자산 x 2배' 외채한도 계산방식

◆ 투주차 해외차입 한도 = 투자총액 - 등록자본금 - 외채차입액*

* 외채차입액 = 단기외채 잔액 + 중장기외채 발생액

⇒ 단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비율을 곱하여 한도를 계산함. 즉, 한도 = (투자총액 - 등록자본금) x (납입자본금/등록자본금)

□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외환관리국의 '외채등기관리방법 배포에 관한 통지'(13년) 등에 의거, 투자허가증 상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 (이하 '투주차'(投注差)) 범위 내에서 해외 차입이 가능

○ 차입한도는 단기외채는 '잔액'을, 중장기외채(차입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해외차입금)는 '발생액'을 기준으로 산정

⇒ 기존 중장기 외채의 기한연장, 신규중장기 외채 차입 후 기존 중장기 외채와 단기외채 상환 시, 해당기업의 외채원금잔액이 증액되지 않고 인민폐로의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 때문에 외채한도를 공제하지 않음.

◆ 순자산 해외차입 한도(잔액상한액) = 순자산 x 2배

외채위험가중치 잔액 : 해외차입관리 잔액	≤	외채위험가중치 잔액상한액 : 해외차입 한도
Σ 외채차입금(위안화, 외화)×①기간환산 인수×②대출종류별 환산 인수+ Σ 외채 차입금(외화)×③환율환산 인수		①최근 1년 이내의 순자산 × 2배 (해외차입 레버리지 비율을 의미)

⇒ 해외차입관리 잔액이 해외차입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함(적거나 동일).

※ 부문별 환산 적용 인수 : 아래표 참조

구 분	적용 조건	인수
① 기간	단기(상환기간 1년 이내)	1.5
	중장기(상환기간 1년 초과)	1.0
② 대출종류	일반거래	1.0
	부외거래(우발채무)	1.0
③ 환율	외화 용자	0.5

주: 중국인민은행이 거시경제, 금융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수 조정 및 발표
자료: 中國人民銀行